의류 업종 근로자를 위한 안내문

1/1/2026–12/31/2026 에 적용되는 최저 시급

New York City

대규모 고용주(직원 **11** 명 이상)	소규모 고용주(직원 **10** 명 이하)
최저 임금 **$17.00**	최저 임금 **$17.00**
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$25.50	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$25.50

Long Island 및 Westchester County

최저 임금 **$17.00**

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$25.50

New York State 나머지 지역

최저 임금 **$16.00**

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$24.00

질문이 있거나,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또는 불만을 제기하려는 경우

전화: (518) 457-9000 | (888) 4-NYSDOL (888-469-7365) | 711 TTY/TDD

임금을 상기에 명시된 최저 임금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**공제액 및 수당:**

- **식사와 숙소 –**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비용을부과하지 않고 제공한 식사와 숙소에 한해 일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적용 금액과 요건은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임금 규정 및 요약에나와있습니다.

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**기타 규정:**

- **안전 –** 고용주는 지역, 주 및 연방 정부의 건강 및안전 법률과 화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 화재 비상구는 업무 시간 중에는 잠겨있지 않아야하고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.
- **가내수공업 –** 공장에서 집으로 일거리를 가져가면 안됩니다. 어떠한 일거리도 집에서 일을 하는근로자에게 직접 배분되어서는 안됩니다.
- **등록 –** 고용주는 노동부(Department of Labor)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고용주는 매년발급되는 등록증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게시해야 합니다.

상기에 명시된 최저 임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**추가 임금:**

- **초과 근무 수당 –** 주당 40 시간(상주 직원의 경우44 시간)이 넘는 초과 근무 수당은 정규 임금의 1 1/2 배이어야 합니다(상기에 명시된 초과 근무 수당미만일 수 없음).
  예외: 주급이 최저 임금의 75 배 이상인 봉급(일정급여)을 지급 받는 전문직 근로자 또는 임원 및관리 직원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이 요구되지않습니다.
- **출근 수당 –** 근무일정대로 출근했는데 고용주에 의해조기 퇴근이 지시되었을 경우, 해당 조기 퇴근일에 대해최저 임금이 적용된 시간외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**총 근무지 체류 시간 –** 하루 근로 시간이 10 시간이넘을 경우, 그 날에 대해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최저 임금 1 시간의 임금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 임금을지급받아야 합니다.
- **유니폼 관리 –** 근로자가 자신의 유니폼을 직접 세탁할경우, 추가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급 금액은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